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오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5-71 |
|----------|-------|

발의연월일 : 2025. 08. .

발 의 자 : 강동오, 김승수, 신종갑,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홍지광

## 1.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1호)

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8조)

다.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9조)

라.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10조)

### 3. 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 2) 「도로교통법시행령」

### 4. 조 례 안 : 붙임

###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7. 11. ~ 7.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

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제2조(정의)                                                                                | ----- | ----- |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       |       |
| 2.·3. (생략)                                                                                                                                         |   | 2.·3. (현행과 같음)                                                                         |       |       |
| <신설>                                                                                                                                               |   |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신설>                                                                                                                                               |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
|                                                                                                                                                    |   |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       |       |

|                                                         |                                                                                                                                                                                                                                                                                                                                                                                                                                                                                                                                                                                       |
|---------------------------------------------------------|---------------------------------------------------------------------------------------------------------------------------------------------------------------------------------------------------------------------------------------------------------------------------------------------------------------------------------------------------------------------------------------------------------------------------------------------------------------------------------------------------------------------------------------------------------------------------------------|
| <p><u>&lt;신 설&gt;</u></p> <p><u>제8조 · 제9조</u> (생 략)</p> | <p><u>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u><br/><u>여사업자로부터 이동 · 보관에</u><br/><u>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p> <p><u>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u> 대<br/><u>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u><br/><u>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u><br/><u>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u><br/><u>력하여야 한다.</u></p> <p><u>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u><br/><u>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u><br/><u>치</u></p> <p><u>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u><br/><u>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u><br/><u>수사항 안내문 부착</u></p> <p><u>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 물</u><br/><u>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u><br/><u>입 및 보장 범위 안내</u></p> <p><u>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u><br/><u>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11조 · 제12조</u> (현행 제8조 및<br/>제9조와 같음)</p>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8조(주차시설 설치)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정보영 |
| 연 락 처  | 02-3153-9643    |

#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

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